

계약변경합의서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네이버'라 한다)와 강일구(상호: TK트래블)(이하 '제공자'라 한다)간에 계약변경합의(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전자문서인 계약서에 상호 전자서명한 후 각각 파일 또는 인쇄 형태로 보관한다.

2024년 5월 3일

'네이버'		'제공자'	
네이버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95(정자동, 1784) 사업자등록번호:220-81-62517 대표이사 최 수 연	날인(서명) 	강일구(상호: TK트래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이문로 39 (이문동) 5층 (이문동, 명경빌딩) 사업자등록번호: 417-70-01307 성명 강 일 구(상호: TK트 래블)	날인(서명)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네이버'라 한다)와 강일구(상호: TK트래블)(이하 '제공자'라 한다)는 2023년 2월 17일에 양 당사자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을 아래와 같이 변경 및 추가하는 데 합의한다(이하 '본 합의서'라 한다).

제1조 (변경 합의사항 상세)

1. 변경대상 계약(이하 '원계약'이라 한다)
 - 2023. 2. 17. 자 네이버 패키지여행 상품 콘텐츠 제공 계약서
2. 변경 및 추가 합의사항

가. '원계약' 전자서명 페이지 및 '주요계약내용' 중 '제공자' 당사자 표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계약 내용]

[전자서명 페이지]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네이버'라 한다)와 TK트래블(이하 '제공자'라 한다)간에 패키지여행 상품 콘텐츠 제공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제공자'

TK트래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이문로 39 (이문동) 5층(이문동, 명경빌딩)

사업자등록번호: 417-70-01307

대표이사 강 일 구

[주요계약내용] 중 '제공자' 부분]

제공자: TK트래블

[변경 내용]

[전자서명 페이지]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네이버'라 한다)와 강일구(상호: TK트래블)(이하 '제공자'라 한다)간에 패키지여행 상품 콘텐츠 제공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제공자'

강일구(상호: TK트래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이문로 39 (이문동) 5층 (이문동, 명경빌딩)

사업자등록번호: 417-70-01307

성명 강 일 구(상호: TK트래블)

[‘주요계약내용’ 중 ‘제공자’ 부분]

제공자: 강일구(상호: TK트래블)

나. ‘원계약’의 ‘주요계약내용’ 중 ‘서비스 정산방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 및 추가한다.

[원계약 내용]

네이버 패키지여행 서비스를 통해 패키지여행 상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총 매출액’에 대하여 다음 비율에 따라 ‘네이버’에 수익배분(수익배분 비율은 상품 유형에 따라 별도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 국내 패키지여행 상품: 5%
- 단, 국내 골프 패키지 상품: 2.5%

[변경 내용]

네이버 패키지여행 서비스를 통해 패키지여행 상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총 매출액(VAT 포함)’에 대하여 다음 비율에 따라 ‘네이버’에 수익배분(수익배분 비율은 상품 유형에 따라 별도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 국내 패키지여행 상품: 5%
- 국내 골프 패키지 상품: 2.5%
- 해외 패키지여행 상품: 5%
- 해외 가이드투어 상품: 7%
- 교통패스, 입장권, 데이터(유심칩, 와이파이) 카테고리 상품: 3%
- 식사권, 스파마사지, 관광권 등 카테고리 상품: 5%

다. ‘원계약’의 ‘주요계약내용’ 중 ‘이행보증’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공자’는 ‘네이버’에 대해 ‘본 합의서’에 따라 변경된 계약에 따른 수익배분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 체결 후 5영업일 이내에 1천만원(₩10,000,000원)을 보증보험으로 설정함으로써 ‘원계약’에 따라 설정되었던 기존 이행보증보험을 변경발행하고, 그 변경 발행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네이버’에 전달해야 한다.

제2조 (효력)

1. ‘본 합의서’는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유효하다.
2. ‘원계약’은 ‘본 합의서’에 정한 조건에 따라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변경되는 것으로 하며, ‘본 합의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원계약’의 내용에 따른다.

제3조 (해석 등)

‘본 합의서’ 및 ‘원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